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1 선고 2020나42882 판결 [구상금청구소송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1 선고 2020나4288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6. 3 선고 2011가소1027375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

피고,항소인 B

변론종결 2020. 12. 17

판결선고 2021. 1. 21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6. 3. 선고 2011가소1027375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(이하 'C : 라 한다)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,576,270원 및 그중 1,458,233원에 대하여 1999. 8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1993. 8.경 D 주식회사(이하 '대라 한다)와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자동 차를할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, 보험가입금액 5,830,000원,보험기간 1993. 8.

2.부터 1996. 2. 1.까지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한다)을

체결하였는데, C는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다.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

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즉시

변상하되,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

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.

그 무렵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은 연 19%였다.

라. 피고가 할부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자,D는 1995. 10. 20.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

구하였고,원고는 1995. 11. 17. D에게 1,458,233원을 지급하였다.

마. 원고는 2000. 10. 20. 피고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소1556525호 로

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01. 2. 7. '피고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,576,275원 및 그 중 1,458,233원에 대하여 1999. 8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판결은 2001. 3. 13. 확정되었다.

바.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0. 10. 8.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[인정근거]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위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판결금채권중 원고가 구하는 2,576,270원 및 그 중 1,458,233원에 대하여 1999. 8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피고는 먼저,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의 친형 이 피고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 (2) 피고는 다시,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확정된 2001. 3. 13.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0. 10. 8.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, 이로써 위 판결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현석판사 당우증판사 최정인